

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중개정령 (안) 입법예고

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4. 11. 5
교통부장관

1. 개정취지

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(73/78MARPOL) 부속서 I (기름오염방지)의 개정사항을 국내 수용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항행중 기름배출기준을 종전에 100ppm미만을 15ppm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유수분리장치는 1998년 7월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방제자재등을 갖추어야 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종전에는 추진기관이 있는 총톤수 100톤이상 유조선과 총톤수 1만톤 이상 유조선의 선박이었으나 총톤수 100톤이상 유조부선에도 방제자재등을 갖추도록 하여 오염사고 발생시 응급방제능력을 확보하도록 함.
- 다. 종전에는 공동부령에서 지정하는 해양오염방지 설비만 형식승인대상이었으나 해운항만청장이

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국제협약개정사항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함.

- 라. 종전에 고시로 시행하던 1993년 7월 6일이후 건조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이상 신조유조선의 이중선체구조기준을 이 규칙에 수용하고 1993년 7월 6일 이전 건조된 현존 유조선중 재화중량톤수 2만톤이상 유조선 및 3만톤이상 석유제품 유조선은 당해선박의 건조시기에 따라 선령 25년 또는 30년이 될 때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통부장관(참조: 수송정책실 조정2과장, 전화 504-902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전화 번호, 주소